결산조정 항목 ① 감가상각비(즉시상각액 포함)(법법§23) ☞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법인의 유형자산 및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의 감가상각비 등은 신고조정 가능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(법법§29) ☞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③ 퇴직급여충당금(법법§33) ④ 대손충당금(법법§34) ⑤ 구상채권상각충당금(법법§35) ☞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 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은 이익처분에 의한 신고조정 가능 ⑥ 법인세법 시행령§19의2①(7)부터 (13)의 사유에 해당하는 대손금(법령§19의2③2) ⑦ 파손･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차손(법법§42③1) ⑧ 천재지변･화재 등에 의한 유형자산평가차손(법법§42③2) ⑨ 다음 주식으로서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,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경우, 부실 징후기업이 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(법법§42③3) - 창업자･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주식 등으로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･신기술사업금융업 자가 각각 보유하는 주식 - 주권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 -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(2008.2.22.이후 평가분) ⑩ 주식등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해당 주식의 평가차손(법법§42③3) ⑪ 생산설비의 폐기손(법령§31⑦)